

「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3월 3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영태 · 박세채 · 이명희 ·
이상호 · 이정희 · 이지연 · 장미경 ·
허민근 의원(10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3월 4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3월 12일

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지원표시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~제10조
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2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6. 3.4. ~ 3.1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전반에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서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 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, 보조사업자에게 이러한 알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- 과거에는 주로 대규모 건축 공사나 고정 시설물에만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그쳤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, 고가의 장비, 심지어 일회성 행사의 현수막과 팸플릿까지 표기 대상을 구체화하며 “지원표지판” 과 “지원표시” 의 개념을 분리하여 적용 범위를 입체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은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, 디자인 등을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가시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제도 시행 초기에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